

49면 20번

정답 없음으로 변경

④ (O) :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강리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제312조 제1항). 2022.1.1. 시행 개정법상 타당한 지문이다.

83면 선지번호 추가

- ① ㉠㉡
- ② ㉢㉣
- ③ ㉤㉥
- ④ ㉦㉧

98면 70번

정답 ③④로 변경

③ (X) :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②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③ ① ②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한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1호 단서. 2022.5.9. 시행).

129면 9번

정답 ②③으로 변경

② (X) :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로 고발인이 삭제되어 타당하지 않은 지문이다(제245조의7 제1항. 2022.5.9. 시행).

430면 10번 문제 오타수정

10.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480면 2번 지문② “방” 자 추가

②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채로 관할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되어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이때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525면 46번 해설① 설명추가

① (X) : 약식절차는 비공개 서면심리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인바, 공판심리를 전제로 한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가 개시되면 정식재판절차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또한 비록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해야 한다.

545면 70번 해설③ 변경

③ (X) : 증거개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으나(제266조의3 제1항), 제35조의 법원보관서류의 열람·복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변호인과 피고인 모두 열람·복사청구가 가능하다(제35조 제1항). 즉, 제35조의 경우에는 변호인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은 열람·복사청구가 모두 가능하다.

597면 16번의 해설 ③에 추가

③ (○) :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촬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동조항에 대해 반대신문권을 과도히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선언하였다(헌재결 2021.12.23. 2018헌바524).**

729면 260번 지문 ㉔ 해설 변경

㉔ (×) : 수사기관이 **甲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乙이 전한 피고인 A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바, 이는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이다. 판례는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 피고인의 증거동 의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는바, 乙이 아니라 피고인 A가 증거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0.09.08. 99도4814).**

833면 368번 지문 ㄱ. 해설변경

ㄱ. (○) : **甲과 乙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해당하는바, 판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대판 1992.07.28. 92도917).**

853면 393번 ④ 해설추가

정답 없음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④ 위계간음죄의 경우 면소판결(대판 2014.4.24. 2012도14253), 당시 시험에서 출제되고 다른 지문이 모두 타당하지 않은 지문이어서 별도로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2도14253판결은 위계간음죄의 경우 반성적 고려에서 형이 폐지된 것으로서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된 경우, 위헌결정의 효력을 감안할 때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따라서 본 지문도 틀린 지문으로 처리해야 한다. 결국, 본 문제는 정답없음으로 처리해야 한다.

899면 32번 추가설명

② (×) : **출제당시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사건병합시 중한 형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였다(대판 2016.5.12. 2016도2136). 다만, 현재 457조의2가 개정되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폐지되고 형중상향금지의 원칙으로 개정된바, 해당지문은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없는 지문이 되었다.**

918면 51번 지문② 오타수정

② 항소심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

956면 91번 지문③ 오타수정

③ 제1심판결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본문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선고된 다음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심이

청구되고 재심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그 재심의 1심판결 선고전까지 하면 된다.

977면 116번 해설③오타수정

- ③ (×) : 법원은 약식명령청구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검사는 즉시 피고인 수에 상응한 공소장부분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공소장부분을 지체없이 피고인·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규칙 제172조).

991면 134번 문제오타수정

134. **배상명령**에 관한 다음 ~

997. 140번 정답없음으로 변경

정답 : 없음

- ③ (O) :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벌금형의 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 출제당시에는 대통령령이 규정되어 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최근 대통령령이 제정되어 타당한 지문에 해당한다.